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법 제179조	100	150	200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다.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250	375	500
라.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250	375	500
마.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	250	375	500
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60	120	200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3호	60	12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4호	100	150	200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5호	60	120	200
차.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법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1항			
1)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 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500	1,000	1,000
2)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3)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		300	500	1,000

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카.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300	500	500
타.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200	300	500
파.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200	300	500
하.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300	500	500
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5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60	120	200
더.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60	120	200
러. 선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6호의2	60	120	200
머. 선박소유자가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6호의3	200	200	200
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100	150	200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의4			
서.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의5	100	150	200
어.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4항제1호	30	60	100
저.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7호	60	120	200
처.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250	375	500
커.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9호	60	120	200
터.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0호	100	150	200
퍼.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1호	100	150	200
허.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250	375	500
고.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4항제2호	30	60	100
노.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2호	100	150	200
도.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법 제179조 제3항제12	100만원 한도에서	15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한도에서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호의2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로.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 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 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60	120	200
모.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 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 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100	150	200
보.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 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3호	100	150	200
소.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	법 제179조 제3항제13 호의2	100	150	200
오.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 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4호	100	150	200
조.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 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 한 경우,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 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5호	100	150	200
초.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250	375	500
코.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 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 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 를 게시한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6호	100	150	200
토. 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100	150	200

선박 내에 갇혀 두지 않은 경우				
-------------------	--	--	--	--